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호흡기전담클리닉 '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 산정기준 변경 안내

1. 관련

- 가. 2021년도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·운영 지원사업 확정내시 및 1차 교부신청 안내 (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32893호, 2020.12.15.)
- 나.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 안내 (보험급여과-4450호, 2020.9.25.)
- 다.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여부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산정 안내(추가) (보험급여과-5104호, 2020.11.3.)
- 라.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(4차)(보험급여과-2569호, 2021.5.17.)

2.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중 '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.

*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기준 중 '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 산정기준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적용되오니,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심병원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 호흡기전담클리닉 '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' 산정기준 >

변경 전	변경 후
○ 적용대상 : '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'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격리한 경우	○ 적용대상 : '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'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<u>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</u> 1) <u>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(예.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)</u> 2) <u>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</u> ※ ' <u>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</u> '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

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기관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**송서현** 행정사무관 **장태영** 보험급여과장 **이중규** 전결 2021. 5. 17.

협조자 행정사무관 **유진아**

시행 보험급여과-2574 (2021. 5. 17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